

학생창업보육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 1조 (명칭 및 소재지)** 이 보육센터는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(이하 “보육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,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- 제 2조 (설립목적)** 보육센터는 학생들에게 벤처정신을 함양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벤처동아리와 벤처 기업가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사업)** 보육센터는 입주한 벤처기업과 벤처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연구과제의 심사, 평가 및 활용방안 모색
 2. 연구비 지원 및 관리
 3. 기술 연구 지도
 4. 창업자금 및 입지 알선
 5. 마케팅 지도
 6. 기타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- 제 4조 (임원)** ①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소장 1인을 둔다.
②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 5조 (임원의 직무)**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내의 연구, 인사, 경리, 기타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 6조 (보육센터 요원)** 보육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, 기술원 및 행정원을 둘 수 있다.
- 제 7조 (자문위원회)** 보육센터의 주요정책 결정자문 및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 위원회

- 제 8조 (운영위원회)**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1. 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안
 2. 예·결산의 심의
 3. 보육센터 제규정 심의
 4. 벤처기업과 벤처동아리 선정 및 졸업
 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4 장 재 정

제 9조 (재원)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충청남도 지원금, 중소기업청 지원금, 대학 지원금,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0조 (예산 및 결산)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11조 (운영규정 등)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사항은 운영규정과 관련법규,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